

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 
민간위탁 운영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7. 2(수) 평창군수(도시주택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14. 7. 23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14. 7. 23(수) 제20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4차 본회의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이유

-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3. 주요골자

### 가. 민간위탁 개요

- 위 탁 기 간 : 위·수탁일로부터 3년간
- 위탁 대상자 : 평창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·단체
- 위탁사무
  -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3대 운영 및 관리
    - ※ 향후 증차 시 증차 차량 포함
  -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

## 나. 위탁기관의 선정

- 위탁자 선정 : 심사에 의한 공개경쟁 모집(사업계획서 제출)
- 위탁자격
  - 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·단체
-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: **2014. 8월중**
-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**2014. 9월중**
- 위탁개시 : **2014. 10월**

## 다. 위탁사업비 및 수입금 관리

- 위탁사업비는 분기별로 위탁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, 인건비 외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
- 운송수입금은 매월 정산하여 평창군 세외수입으로 처리

## 라.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

-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선량한 관리로서의 의무
  - 군수의 승인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양도 불가
  - 수탁재산(장애인콜택시)의 손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
  - 계약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
- ※ 자세한 위·수탁에 관한 내용은 위·수탁계약 시 명기

#### 4. 검토결과

- 본 동의안은 『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을 도입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  
- 『평창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』 제12조에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리 및 운영의 사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  
- 검토대상 동의안의 위탁내용을 보면 <sup>1)</sup>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3대의 운영 및 관리, <sup>2)</sup>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을 주 위탁사무로 하고 있으며,
  
- 체계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투명하고 능력있는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며,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도입·운영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불편이 없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휘·감독 등 운영·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